

# 장애인의 차별실태와 정책과제

*Discriminations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Current State and Policy Implications*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등 장애인복지환경 변화 속에 장애인의 권리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또래 학생으로부터, 보험제도계약에서의 차별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유형 중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이 차별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 차별이 없다고 인지하는 정도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는 약간 높아지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향후 장애차별 예방 및 금지를 위해서는 장애차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홍보,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장애인의 인권보장체계 마련, 차별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1. 들어가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추정 장애인구수는 272만명으로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sup>1)</sup>하여 왔고 사회참여 욕구 또한 증가하여 교육권, 이동권, 노동권 등 각종 생활 영역에서

의 권리보장 요구와 자립생활 운동의 확산 등 새로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차별과 편견의 벽을 넘어서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궁극의 모습은 장애로 인해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으로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2014년 실시된 장애인실태조

1)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른 추정장애인구수는 214만명(2005년)에서 272만명(2014년)으로 증가함.

사 자료를 이용하여 장애인의 차별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sup>2)</sup>.

## 2.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실태

장애인은 전 생애에 걸쳐 전반적인 사회활동영역(학교생활, 직장생활, 지역사회생활 등)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을 학교 입학·전학, 학교생활, 결혼, 취업, 직장생활, 운전면허 취득, 보험계약, 의료기관 이용, 정보통신(방송포함) 이용, 지역사회생활로 구분하여 제 영역에서의 차별 경험이 있는지를 장애유형 분류체계<sup>3)</sup>에 따라 외부신체기능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기관장애로 구분하여 알아보았고, 성별 차별 경험여부도 알아보았다. 더불어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이후

의 변화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와 비교·제시하였다.

장애인의 유치원(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입학이나 전학에서 차별 경험이 있는지 보면, 전체적으로 유치원(보육시설) 27.1%, 초등학교 38.8%, 중학교 31.6%, 고등학교 25.1%, 대학교 12.5%가 차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에서의 차별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의 고등교육과정으로 올라갈수록 차별 경험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모든 교육과정에서 정신적 장애인의 차별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차별 경험이 51.0%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유치원 및 학교 입학·전학에서의 차별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경우에는 남성의 차별 경험이 약간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표 1.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입학·전학)

(단위: %)

구분	장애유형			성별		전체
	외부신체기능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기관장애	남자	여자	
유치원(보육시설)	17.8	36.6	14.3	23.6	33.5	27.1
초등학교	32.9	51.0	27.6	35.9	43.5	38.8
중학교	24.8	46.3	16.2	30.0	34.4	31.6
고등학교	18.0	40.9	10.3	26.6	22.2	25.1
대학교	10.3	22.5	9.5	12.6	12.3	12.5

2) 장애인의 차별실태는 '김성희 외(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기초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차별실태 분석대상은 재가장애인 2,646,064명임.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5개의 장애유형의 분류체계는 외부신체기능장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내부기관장애(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임.

다. 이는 남성장애인의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더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sup>4)</sup>.

장애인의 학교생활시 차별 경험을 교사로부터, 또래 학생으로부터, 학부모로부터의 차별로 구분하여 보면, 또래 학생으로부터가 47.1%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교사로부터 18.7%, 학부모로부터

1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전반적으로 정신적 장애인의 차별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차별 경험이 62.7%로 매우 많았다. 성별로는 학교 생활 전반적으로 여성의 차별 경험이 남성보다 더 많았는데, 역시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차별 경험이 53.6%였다.

**표 2.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학교생활)**

(단위: %)

구분	장애유형			성별		전체
	외부신체기능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기관장애	남자	여자	
교사로부터	12.7	31.0	15.3	17.6	20.6	18.7
또래 학생으로부터	39.7	62.7	33.7	43.3	53.6	47.1
학부모로부터	9.4	22.5	10.3	13.4	14.3	13.7

장애인의 결혼과 취업에서의 차별 경험을 보면, 결혼에서 16.4%, 취업에서 35.8%가 차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결혼과 취업 모두 정신적 장애인의 차별 경험이 50% 이상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결혼에서는 여성의 차별 경험이 18.3%로 남성(15.2%)보다 많았

고, 취업에서는 남성이 37.1%로 여성(32.8%)보다 차별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직장생활에서의 차별 경험을 소득(임금), 동료관계, 그리고 승진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장애인은 소득(임금)에서 23.9%, 동료관계에서 20.0%, 그리고 승진에서 13.3%가 차별 경

**표 3.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결혼 및 취업)**

(단위: %)

구분	장애유형			성별		전체
	외부신체기능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기관장애	남자	여자	
결혼	14.5	50.0	15.3	15.2	18.3	16.4
취업	33.6	56.5	41.0	37.1	32.8	35.8

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성별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은 남성장애인 54.7%, 여성장애인 27.9%임.

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직장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정신적 장애인의 차별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소득(임금) 과 동료관계에서의 차별 경험이 약 47%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모든 영역에서 남성의 차별 경험이 더 많았는데 특히 소득(임금)에서의 차별 경험이 24.6%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취업활동이 여성에 비해 많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5)</sup>.

이외 장애인은 운전면허 취득에서 10.2%, 보험제도 계약에서 45.4%, 의료기관 이용에서 4.6%, 정보통신이용에서 1.9%, 지역사회생활에서 7.3%

가 차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보험제도 계약에서의 차별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적 장애인이 운전면허 취득(27.3%), 보험제도 계약(65.8%), 의료기관 이용(9.2%), 지역사회생활(17.1%)에서 차별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통신 이용에서만 외부신체기능장애(2.0%)의 차별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운전면허취득, 의료기관 이용, 지역사회생활에서 여성보다 차별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험제도 계약과 정보통신이용에서는 여성의 차별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직장생활)

(단위: %)

구분	장애유형			성별		전체
	외부신체기능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기관장애	남자	여자	
소득(임금)	22.1	46.8	23.9	24.6	21.9	23.9
동료관계	18.0	46.9	14.2	20.4	19.1	20.0
승진	11.7	33.4	8.4	14.6	10.0	13.3

표 5.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운전면허취득, 보험제도계약, 지역사회생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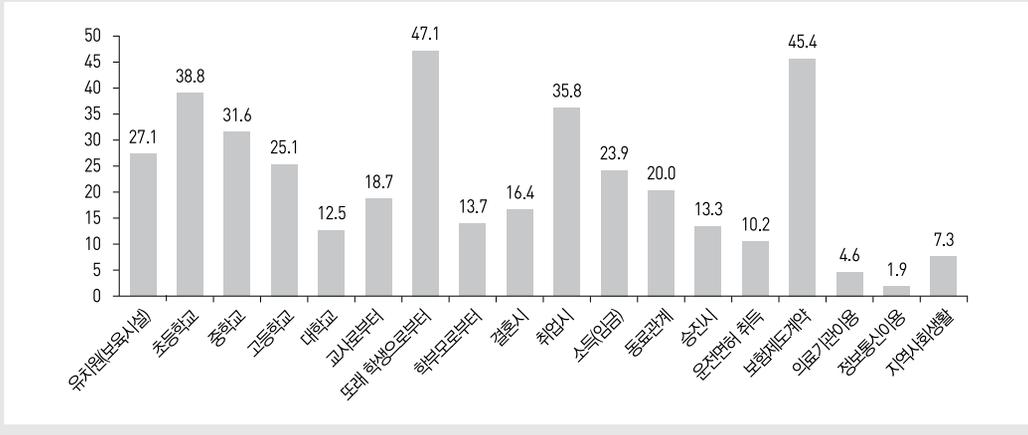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장애유형			성별		전체
	외부신체기능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기관장애	남자	여자	
운전면허 취득	9.6	27.3	6.0	10.2	10.1	10.2
보험제도 계약	42.0	65.8	61.5	44.4	47.2	45.4
의료기관 이용	4.0	9.2	3.6	4.7	4.3	4.6
정보통신 이용	2.0	1.8	1.0	1.8	2.0	1.9
지역사회생활	6.1	17.1	4.0	7.6	6.8	7.3

5)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 성별 인구대비 취업자비율은 남성장애인 46.9%, 여성장애인 22.5%임.

그림 1.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영역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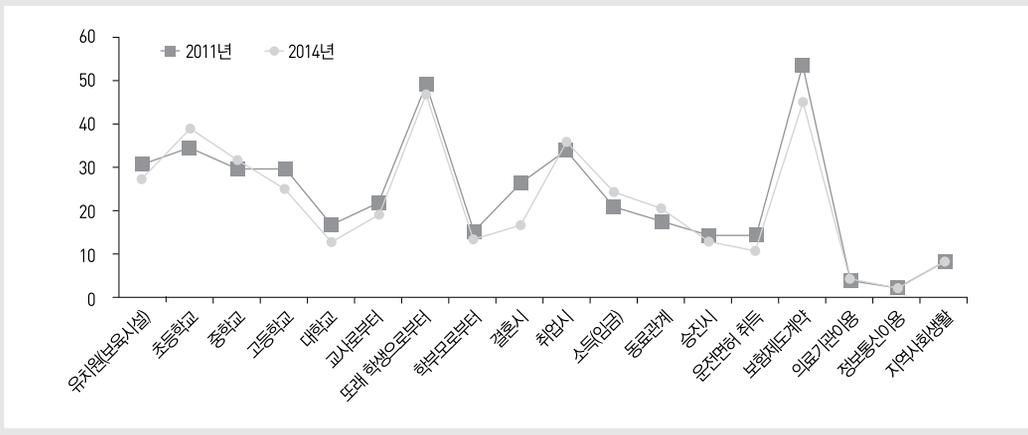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경험을 영역별로 비교하여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학교생활에서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차별이 47.1%로 가장 많고 다음이 보험제도 계약(45.4%), 초등학교 입학·전학(38.8%), 취업(35.8%)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통신 이용

에서의 차별 경험이 1.9%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을 이전 조사인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전학, 취업, 직장생활에서의 소득(임금) 및 동료관

그림 2.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2011년, 2014년)

(단위: %)



계, 의료기관 이용에서 차별 경험이 2011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학에서의 차별 경험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혼에서의 차별 경험은 16.4%로 2011년(26.5%)에 비해 가장 많이 감소한 영역이다. 그러나 여전히 보험제도계약과 학교생활에서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차별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영역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 3. 장애 차별에 대한 인지도

본인의 장애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에 대해서는 항상 느낀다 6.2%, 가끔 느낀다 31.6%, 별로 느끼지 않는다 41.7%, 전혀 느끼지 않는다 20.5%로 나타나,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는 3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적 장애(67.5%), 외부신체기능장애(34.0%), 내부기관장애(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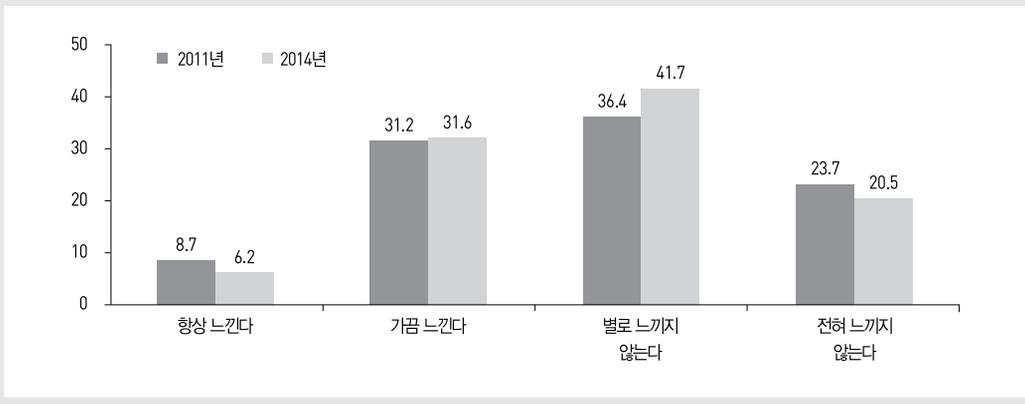
표 6.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

(단위: %)

구분	장애유형			성별		전체
	외부신체기능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기관장애	남자	여자	
항상 느낀다	5.1	14.6	4.1	6.9	5.2	6.2
가끔 느낀다	28.9	52.9	26.8	31.5	31.7	31.6
별로 느끼지 않는다	44.0	24.5	43.0	40.8	43.0	41.7
전혀 느끼지 않는다	21.9	7.9	26.1	20.8	20.1	2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3.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

(단위: %)



의 순으로 본인의 장애로 인한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38.4%)이 여성(36.9%)보다 장애 때문에 차별을 약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2014년 실태조사결과에서는 37.8%로 2011년 실태조사결과인 39.9%에 비해 2.1%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그림 3).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1.0%, 별로 없다 26.4%, 약간 많다 46.2%, 매우 많다 26.4%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27.4%, 차별이 많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72.6%인 것으로 차별이 많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차별이 없다고 인지하는 경우에 비해 약 2.6배 수준으로 많은 것이다. 장애유형별로는 내부기관장애(30.1%), 외부신체기능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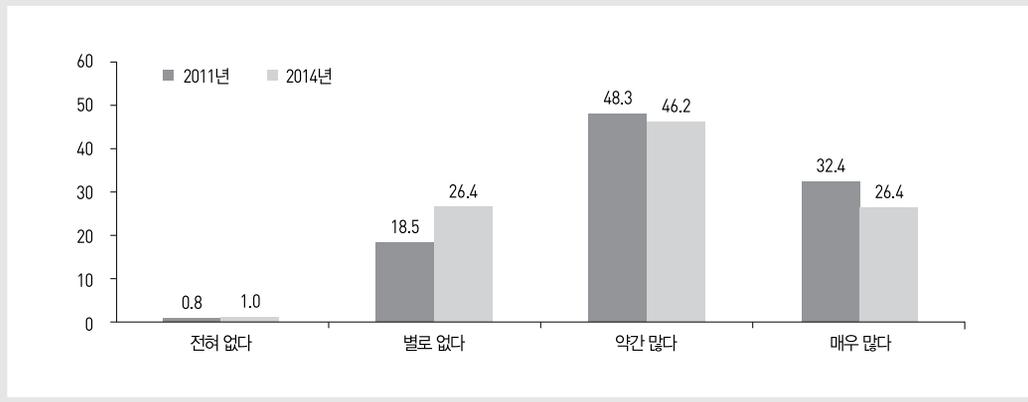
표 7.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지 정도

(단위: %)

구분	장애유형			성별		전체
	외부신체기능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기관장애	남자	여자	
전혀 없다	0.9	0.7	3.3	0.8	1.3	1.0
별로 없다	28.1	13.5	26.8	23.7	30.0	26.4
약간 많다	46.4	47.0	41.3	47.0	45.2	46.2
매우 많다	24.5	38.8	28.6	28.5	23.4	26.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4.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지 정도(2011년, 2014년)

(단위: %)



(29.0%), 정신적 장애(14.2%)의 순으로 차별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31.3%, 남성의 24.5%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적 장애인이, 성별로는 남성장애인이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인지하는 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

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2014년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27.4%로 2011년의 19.3%에 비해 8.1% 포인트 증가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8.3%,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3.1%, 알지 못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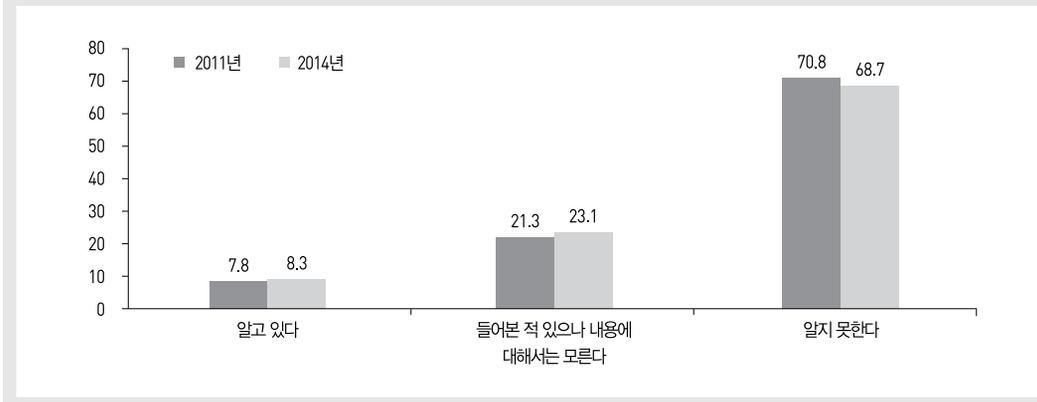
표 8.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장애유형			성별		전체
	내부기관장애	외부신체기능장애	정신적 장애	남자	여자	
알고 있다	10.1	8.0	9.4	10.0	6.0	8.3
들어본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2.4	23.3	22.2	26.4	18.5	23.1
알지 못한다	67.6	68.8	68.4	63.6	75.5	68.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5.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 여부(2011년, 2014년)

(단위: %)



다 68.7%로 나타나,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내부기관장애(10.1%), 정신적 장애(9.4%), 외부신체기능장애(8.0%)의 순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장애인(10.0%)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인지 여부를 2011년도 장애인실태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다는 경우가 2014년은 8.3%로 2011년의 7.8%에 비해 0.5% 포인트 증가하였다. 반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알지 못한다는 경우는 68.7%로 2011년의 70.8%에 비해 2.1%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그림 5).

## 4. 나가며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분석결과 나타난 장애인의 차별실태를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차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이에 따른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장애인은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학교생활에서 또래 학생으로부터, 학교 입학, 취업, 보험제도 계약 등의 영역에서 차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장애차별금지 이행을 위한 독려 및 제도적 개선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차별 경험이

45.4%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보험제도상 차별의 경우는 2011년 실태조사결과에서도 차별 경험이 많았던 영역으로서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사회생활 전반적인 영역에서 장애차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장애차별 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차별금지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는 2014년 실태조사결과 8.3%로 2011년 결과인 7.8%에 비해 0.5% 포인트 증가하였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인지하는 경우는 31.4%로 2011년의 29.1%에 비해 2.3% 포인트 증가한 결과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장애인의 차별금지 이행을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장애차별금지 이행을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 이외 전 국민의 인지 및 이해가 필수이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차별금지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 캠페인 및 TV, 라디오,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장애차별 해소를 위한 장애에 대한 바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장애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장애로 인한 차별실태 분석에서 학교생활에서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차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린 학생시기부터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이 필요

합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에 대한 이해를 통해 바른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차별 예방을 위한 장애인의 인권보장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형성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기제를 없애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과 접근성을 갖춘 관련기관의 설치,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과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인권옹호체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장애인 중 차별 취약대상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차별실태 분석결과 정신적 장애인이 모든 사회영역의 차별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대상 계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장애인실태 조사결과에서도 동일하였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차별상황에 있는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경감시키고 인권보호를 위한 많은 관심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